

「보험자본건전성
선진화 추진단」
제4차 회의

2020.1.30.(목) 15:00
금융위원회 16층
대회의실

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

2020. 1. 30.(목)

금 용 위 원 회

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
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I. 인사 말씀

안녕하십니까

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.

우선 「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」
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
감사말씀을 드립니다.

최근 국내 보험산업은
고령화·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
경기침체 및 장기 저금리 기조로 인한
성장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.

또한, IFRS17 및 新지급여력제도(K-ICS) 시행이
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
영업관행과 상품구조설계 등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
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.

II. 보험부채 구조조정의 필요성

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
후순위채 발행, 장기국채 투자확대 등
자본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

다만, 후순위채 발행금리의 상승,
장기국채 거래비중의 제약 등으로 인해
제도 변화에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
잘 알고 있습니다.

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여
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한도폐지를 내용으로 하는
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
현재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이번 제4차 「보험재무건전성 선진화 추진단」에서는
보험부채 구조조정 지원방안으로서
보험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“공동재보험”을
도입하고자 합니다.

Ⅲ. 공동재보험 도입방안

“공동재보험”은 재보험사에
위험보험료만 지급하는 “전통적 재보험”과 달리
영업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지급하는
재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.

- * 전통적 재보험은 영업보험료(위험보험료+저축보험료+부가보험료) 중
위험보험료만 재보험사에 재보험료로 지급하고, 보험사고로 인한
인적·물적 피해만을 보상

이는 오래 전부터 유럽, 미국, 일본 등
장기 저금리 상황을 경험한 선진국에서
금리위험 등을 헤지하기 위한 방법으로
활용되어 왔습니다.

정부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
우리나라의 보험회사들도
저금리 환경에 대응하는 수단으로
공동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.

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은
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.

우선,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등은
전통적 재보험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
공동재보험 허용을 위해 이를 보완*할 계획입니다.

- * ① 지급여력제도(RBC) : 공동재보험을 통해 원보험사는 금리위험 등을
재보험사에 이관한다는 점에서 지급여력제도에 이를 반영
② 회계처리 : 원보험사가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책임준비금의 시가
평가액과 원가평가액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명확화

또한, 공동재보험 도입초기에
발생할 수 있는 편법적 거래* 등을 방지하기 위해
거래내용의 사후보고절차를 신설하는 등
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.

* 외형상 원보험사의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 이관하는 공동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면계약 등을 통해 원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만 개선된 것처럼 위장하는 거래 등으로 보험업법 위반사항임

마지막으로, 건전한 재보험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스스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.

IV. 공동재보험 도입효과

“공동재보험”의 도입효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

첫째, 원보험사는 보험위험과 함께 금리위험 등 시장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함으로써 손실확대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게 됩니다.

특히, 생명보험사는 금리에 대한 부채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동재보험을 통해 금리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두 번째,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후순위채 발행 등 가용자본 확대방안 외에 공동재보험이라는 요구자본 감소방안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선택가능성을 확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.

셋째, 국내 보험회사가 미국, 유럽 등 글로벌 재보험사와의 공동재보험거래를 통해 이들의 거래경험(know-how)과 자산운용능력을 활용하는 점도 장점으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.

V. 마무리 말씀

마지막으로 공동재보험 도입일정과 관련하여 공동재보험이 IFRS17 및 K-ICS을 앞두고 보험회사의 선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관련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.

또한 이미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험상품 재매입(buy-back), 계약이전 등에 대해서도 보험소비자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도입가능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할 예정입니다.

현재 보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, 보험이 국민의 미래위험을 대비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